

2026년 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 신규장학생 선발계획(안)

[2026. 6. 3.(수), 강릉연구지원과 대학원혁신팀]

1 추진배경

- 한국장학재단의 「2026년도 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 신규장학생 배정 안내 및 장학생 추천 협조 요청」에 따라, 우수 이공계 박사과정생을 발굴·지원하고 국가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

※ 관련: 강릉학생지원과-2609(2026.6.1.) 「2026학년도 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 신규장학생 추천 요청」

2 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최대 8학기 내에서 정규학기까지 지원
 - 최대 지원기간에서 기이수 학기를 제외한 학기만큼 지원

< 지원 기간 예시 >

구분	박사과정/통합과정	
지원 기간 (A)	8학기	
기 이수학기(B)	1학기	3학기
실 지원가능 기간(A-B)	7학기	5학기

- ※ 지원 기간 중 학위취득(졸업) 시 잔여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종료
- ※ 단, 학위 통합 또는 연계과정(석·박사 등)을 수학하는 경우에도 상기 지원기간을 적용(학사규정, 학칙 등 학교 관계규정과 무관)

- 지원금액: 학기당 375만 원(연간 750만 원)

□ 중복수혜

-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업 전념 지원목적으로, 타 장학금, R&D 인건비 등과 중복수혜 허용

※ 단, 대학원 대통령과학·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과 중복수혜 불가

3 선발 기준

1. 지원자격

- (공통)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, 국내 일반·전문대학원의 자연과학·공학계열 학과·전공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
- '26년도 1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잔여 학기 수가 1학기 이상 남은 자
 - 수료생(연구등록생 등)은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 불가
 - 통합과정생은 소속 대학원 관계 규정(학사 규정 등)에 따라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잔여 학기 수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
- ※ 단,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△석·박사 통합은 기이수 학기 4학기 이상을 박사과정으로 △학·석·박사 통합은 기이수 학기 12학기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

< 통합과정 구분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>

구분	석·박 통합과정	학·석·박 통합과정
신입	기이수 학기가 4학기 (현재 재학학기 5학기)	기이수 학기가 12학기 (현재 재학학기 13학기)
재학	기이수 학기가 5학기 이상이며 5학기 기준 잔여 학기 1학기 이상인 자 (현재 재학학기 6학기 이상)	기이수 학기가 13학기 이상이며, 잔여 학기가 1학기 이상 남은 자 (현재 재학학기 14학기 이상)

- 자연과학·공학계열 학과·전공자인 전일제(full-time) 박사과정생
 - (계열분류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'25년도 대학원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
 - (전일제) 주 40시간 이상 학업·연구에 전념하는 전업(full-time) 과정생으로, 전일제 여부는 ①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, ②대학원별 자체 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
- ※ 4대 사회보험 가입자라도 대학원에서 전업 학생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일제로 인정 가능
- ※ '전일제 증명서'를 제출하는 경우도, 장학금 시작일부터 발급받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대학원에서 보관 필수

< 이공계열 및 전일제 기준 >

① **(이공계 범위)**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1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상 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

- ※ 단,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, △세부전공이 기초연구(임상제외)로 △면허증·자격증(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·간호사·약사)을 보유하지 않고, △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
- ※ 기타 융합학과·전공 등의 경우 대학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름

<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별표1 및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상 계열 구분 >

대계열	포함되는 소계열
자연과학계열	이학, 해양, 농학, 수산 등을 포함
공학계열	공학 등
의학계열	의학, 치의학, 한의학 및 수의학, 간호, 보건, 약학 및 한약학 등

② **(전일제 범위)**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는 전업 학생(Full-Time)으로, 선발 시점 대학별 자체 규정 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

< 비전일제 기준 >

- ▶ 장학금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(취업자 또는 휴직자) 또는 자격증/명의 대여 학생
- ※ 단,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의 경우, '전일제 과정 증명서'를 제출하면 전일제로 인정
- ▶ 장학금 신청일 기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(시간강사)
- ▶ 학과장 승인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사·교내 벤처기업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

※ 비전일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(아르바이트 제외)은 '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'를 제출하여도 인정 불가

□ **(성적요건)** 아래의 석사 또는 박사성적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박사 신입생 또는 재학생

- **(박사 신입·재학생)** 국내·외 석사 졸업성적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.5 이상/4.5 만점 기준(3.3 이상/4.3 만점)을 충족하는 자
- **(박사 재학생)** 박사과정 총평균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.5 이상/4.5 만점 기준(3.3 이상/4.3 만점)을 충족하는 자

※ 석·박사통합과정생은 학사규정, 학칙 등 대학원 관계 규정상 석사과정으로 보는 이수학기 평균 성적을 우선하되, 학위과정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석·박사통합과정 누적 성적을 반영

※ 학·석·박사통합/연계과정생은 학사규정, 학칙 등 대학원 관계 규정상 석사과정으로 보는 이수학기 평균 성적을 우선하되, 학위과정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학·석·박사통합과정 누적 성적을 반영

※ 편입으로 인해 총평균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,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성적을 기준으로 함

※ 해외 학위자의 성적 증명서에 거짓·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, 향후 동 장학금 재지원 불가

□ (선발 제외)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, 자퇴 또는 제적 상태인 자

2. 장학생 사후 관리

□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

-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▶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전액 등 반환(장학증서 반납 조치)
- 자퇴(단, 질병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),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
 - ▶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
- 학교를 변경하거나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
 - ▶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
-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
 - ▶ 장학생 자격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
- 계속지원기준 2회 미달 시
 - ▶ 장학생 자격탈락 및 장학금 지급 중단
 - ▶ 단,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은 누적 2회 미달 시 자격탈락
-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
 - ▶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
- 장학생 준수사항(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) 위반 등으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생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경우
 - ▶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학생 자격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등 반환

4 자체 선발 기준

1. 선발인원

장학명	유형	배정인원	선발인원
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	박사신입	2명	2명
	박사재학	2명	2명

2. 자체 선발 기준

- 한국장학재단의 「2026년도 박사우수장학금(이공계) 신규장학생 선발 기본계획」을 준용하여 수립하며, 연구활동 우수성, 학업·연구계획, 성적, 사회공헌활동계획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
- 연구활동 우수성은 논문 및 연구 참여 실적, 이공계 수상실적 등 석사에서 박사 장학금 신청 시점까지 연구 활동 관련 사항을 평가하며, 박사신입 및 박사 재학생 모두 동일 기준으로 적용
- 유형·배정인원에 따라 박사신입과 박사재학을 구분하여 평가

【 대학원 자체 선발 기준 권장 및 유의사항 】

- ▶ 학업·연구계획(25%), 연구활동 우수성(45%)*, 성적(20%), 사회공헌활동계획(10%)**, 소득 수준 (가점 10%) 등 항목별 배점 비율 부여
 - * 논문 및 연구 참여 실적, 이공계 수상실적 등 석사에서 박사 장학금 신청 시점까지 연구 활동 관련 사항
 - ** 사회기여 실적 및 이공계 진로 진출, 연구 및 학업을 통한 사회기여 계획 등 사회적 책임감 관련 사항
- ▶ 평가항목 및 배점 비율은 권고사항이며, 실제 선발 기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수립
- ▶ 대학별 자체선발기준 수립 시, 비정량(수치화 불가) 평가 항목은 제외
 - (예시) 품행이 단정한 자, 면담을 통한 학업 및 가정형편 참고 등
 - 단, 비정량적인 연구활동 우수성 항목은 평가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(교수, 학(교)과장 추천자료, 계량평가 내부문서(선발위원회 등), 교수회의자료 등) 보관 필요
- ▶ 단과대별로 선발하는 경우, 장학팀에서 계획한 단과대별 인원 배정방식 및 단과대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추천자료 일체(서류, 면접 심사표 등) 대학원 보관 필요
- ▶ 추천 대상자 중 미선발 사유(학생 미신청, 본인포기 등)가 발생하여 차순위자(후보자)를 선발할 경우 미선발 사유 관리 필요(증빙자료 별도 보관 등)
- ☞ 위의 자체선발기준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관련 필수 준수사항(최소 충족요건, 평가항목별 비중 등)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며, 자료 요청 시 선발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구비 필요

3. 평가 항목 및 배점표

□ (공통) 평가방법

평가항목	배점(%)	측정지표	평가내용	평가기준
① 연구활동 우수성	45	연구활동 실적서	• 논문실적, 학술대회 발표, 수상실적, 연구참여 활동, 연구발전 가능성 등	매우우수(45), 우수(40), 보통(35), 미흡(30), 매우미흡(25)
② 학업·연구 계획	25	학업·연구 계획서	• 연구목표, 추진전략, 연구 수행 의지 및 발전 가능성 등	매우우수(25), 우수(20), 보통(15), 미흡(10), 매우미흡(5)
③ 성적	20	성적증명서	• (박사신입) - 석사과정 총평점평균 • (박사재학) - 박사과정 총평점평균	3.5이상~3.7미만(16) 3.7이상~3.9미만(17) 3.9이상~4.1미만(18) 4.1이상~4.3미만(19) 4.3이상(20)
④ 사회공헌 활동계획	10	사회활동기여 계획서	• 봉사활동 실적 • 사회공헌 및 사회환원 계획	매우우수(10), 우수(9), 보통(8), 미흡(7), 매우미흡(6)
합계	100			
⑤ 소득수준 (가점)	10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인정증명서 • 기초생활(10), 차상위(5)	

□ (동점자 처리기준)

○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.

①연구활동 우수성 ②학업·연구계획 ③성적(박사신입: 석사과정 성적, 박사재학: 박사과정 성적) ④사회공헌활동계획

※ 상기 기준을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동점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

※ 신청인원이 배정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을 생략할 수 있음

5 신청일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일정

구분	일정	담당부서
신청서 제출	2026. 6. 4.(목) ~ 6. 10.(수)	학생 → 학과
심사위원 추천 및 구성	~ 2026. 6. 9.(화)	대학원혁신팀
장학대상자 추천	2026. 6. 11.(목)까지	학과 → 대학원혁신팀
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자 결정	2026. 6. 12.(금)(예정)	대학원혁신팀
장학생 추천	2026. 6. 12.(금)(예정)	대학원혁신팀 → 장학팀

※ 상기 일정은 학내 사정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□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① 연구활동실적서 1부(서식 1) ② 학업·연구계획서 1부(서식 2) ③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④ 사회활동실적 및 계획서 1부(서식 3) ⑤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1부(서식 4)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인정 증명서 1부(해당자)

※ (참고) 저소득층 증빙자료

구분	자격명	증빙자료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
	의료급여수급자	
차상위계층	주거급여수급자/교육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주거/교육)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 계층 대상자	차상위 계층 확인서